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5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문정복・민형배・정을호

김문수 · 김준혁 · 강경숙

송재봉 · 김영호 · 김영배

윤준병 • 진선미 • 신영대

김주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,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. 또한, 의대 증원으로 인한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.

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재난이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,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,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

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(안제11조의3 신설).
- 나.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,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32조).
- 다.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,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(안 제32조의2 신설).
- 라.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,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(안 제34조의5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,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3(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・인증 절차) ①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(이하 "의료과정운영학교"라 한다)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・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의료과정운영학교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평가·인증의 유효기 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 청기간 내에 평가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

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·인증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 - 나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
 - 다.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 - 라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
- 3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
- 4. 국립학교의 정원
- 5. 공립학교의 정원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의 모집단위별 정원 중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의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과대학정원

배정심사위원회(이하 "배정심사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의사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각 절반씩 추천하는 의사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「국가재정법」 제22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34조의5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제1호, 제2호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,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

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.

- 1.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
- 2.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
- 4.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, 학과 폐지,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- 5. 다른 법률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
- ⑧ 학교협의체는 제7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(이하 "회원대학"이라 한 다)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, 그 방식은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
- ⑨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방식은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1조의3(의료과정운영학교 평 |
| | <u>가·인증 절차) ① 의학·치의</u> |
| | <u>학·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</u> |
| | 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|
| | 학교(이하 "의료과정운영학교" |
| | 라 한다)는 해당 교육과정의 |
| |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|
| | 내에 인정기관에 제11조의2제 |
| | 2항 단서에 따른 평가·인증을 |
| | 신청하여야 한다. |
| |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|
| |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 |
| |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 |
| | 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|
| |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|
| |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 |
| | 하는 기간으로 한다. |
| | ③ 의료과정운영학교로서 인증 |
| | 을 받은 학교는 평가·인증의 |
| |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|
| |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 |
| | 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 |
| | <u>가·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 |

<u>제11조의3</u>(교육통계조사 등) (생략)

제32조(학생의 정원)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·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의 학생 정원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 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평가를 완료 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 야 한다.

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・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・인증의 절 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1조의4(교육통계조사 등) (현 행 제11조의3과 같음)

| 제32조(학생의 정원 | 1) 1 |
|-------------|------|
|-------------|------|

만,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이에 따라야 한다.

1.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

<신 설>

<신 설>

<<u>신</u> 설> <<u>신</u> 설> <신 설> 집단위별 정원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

<u>가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</u> 따른 의료인

<u>나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</u> <u>률」 제1조의2에 따른 의</u> 료기사

<u>다.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</u> <u>따른 약사 및 한약사</u>

라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의사

3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8 조제3항에 따라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

4. 국립학교의 정원

5. 공립학교의 정원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 목의 모집단위별 정원 중 의과 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의 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과대학정원배정심사위원회 (이하 "배정심사위원회"라 한 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 다. 이 경우 의사 위원은 대한 <신 설>

<신 설>
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

6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 6 -----

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각 절반씩 추천하는 의사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이 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하며, 같은 항 제5호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2조의2(의과대학 교육여건 악 화 방지를 위한 특례) ① 교육 부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 · 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・재정 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「국 가재정법」 제22조에 따른 예 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공표) ① ~ ⑤ (생 략) 공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관계 법령의 제정·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| /다시 사계\ |
|---------|
| <단서 삭제> |
| |

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입학전형기 본사항은 제1호, 제2호의 경우 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, 대학입 학전형시행계획은 대학입학전 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 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.

- 1. 관계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
- 2.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

<신 설>

<신 설>

-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
- 3.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
- 4.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, 학과 폐지,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- 5. 다른 법률에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
- ⑧ 학교협의체는 제7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(이하 "회원대학"이라 한다)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, 그 방식은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
- ⑨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 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방식은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

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 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